

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858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10. 13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면제, 강소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의 일몰 기한 도래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(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)에 근거하여 전통시장의 발전 및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의 개발·육성 지원을 위해 3년간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의 면제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(안 제7조의 3)
- 나.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(안 제7조의4제1항 ~ 제2항)
- 다. 기타 기존 조항의 띄어쓰기, 맞춤법, 용어 정비

3. 참고사항

- 가. 개정조례안 : **【붙임 1】**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**【붙임 2】**
- 다. 관계법령발췌서 : **【붙임 3】**
- 라.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- 마. 예산수반사항 : **【붙임 4】**
- 바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 - 입법예고 : 2025. 8. 20. ~ 2025. 9. 9. (20일간)
- 사. 기타 참고사항
 - 1) 현행조례 : **【붙임 5】**
 - 2) 방침결정문 : **【붙임 6】**

【붙임 1】

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본문 중 “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”를 “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「지방세법」 제112조”를 “「지방세법」 제112조”로 한다.

제5조제2호 중 “「식품산업진흥법」 제19조의3제1항”을 “「식품산업진흥법」 제19조의3제1항”으로 한다.

제7조 본문 중 “현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”를 “현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”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그러하지 아니하다”를 “그렇지 않다”로 한다.

제7조의3 중 “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0조제1항”을 “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0조제1항”으로, “「지방세법」 제112조”를 “「지방세법」 제112조”로, “포함한다.)를 2025년 12월 31일”을 “포함한다)를 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7조의4제1항 본문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「연구개발특구법」 제4조”를 “「연구개발특구법」 제4조”로,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“ 조례”를 ““조례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“경우 :”를 각각 “경우:”로 한다.

제11조의2 본문 중 “법 제177조의2 제1항”을 “법 제177조의2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그러하지 아니하다”를 “그렇지 않다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,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소관부서		세 정 과
입	세정과장	이 대 순
안	세정팀장	김 채 은
자	담 당 자 (연락처)	최 재 숙 (481-2198)

【붙임 2】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을 적용할 때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시각장애인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. 다만,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7조에 따라 장애 상태를 확인한 결과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4조(문화유산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) ① 「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</p>	<p>제2조(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문화유산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.</p> <p>제9조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“<u>조례</u>로 정하는 금액”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<u>경우</u> : 고지서 1장당 800원</p> <p>2.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<u>경우</u> : 고지서 1장당 1,600원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1조의2(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) 법 제177조의2제2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(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되는 경우 <u>법 제177조의2 제1항</u>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한다. 다만, 제4조 및 제7조의3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<u>그러하지 아니하다</u>.</p>	<p>-----.</p> <p>제9조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① ----- ----- “<u>조례</u>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<u>경우</u>: -----</p> <p>2. ----- ----- ----- <u>경우</u>: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의2(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법 제177조의2제1항</u> -----. ----- ----- ----- <u>그렇지 않다</u>.</p>